군유 행정재산 평창휴게소 행복장터 무상사용 동의안

의 안 번 호	50

제안연월일 : 2026. 10. .
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군유 행정재산인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행복장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전액면제(무상사용) 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○「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운영기간: 2026. 11. ~ 2031. 11.(5년간)

○ 운 영 자: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

○ 내 용: 행복장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

○ 위탁금액: 무상사용

○ 법적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7조(사용료 감면)

○ 재산내역

재산의 표시				비고
구분	지번	지목/구조	면적(㎡)	
건물	용평면 이목정리 472-2	가설건축물	58.3	

3. 참고사항

○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위치도



현장사진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2. ~ 3. 생략
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①~④생략

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
2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